**1. 신용정보활용체제 신구 조문 대비표**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1. 이용목적 가. ~라. (생략)마. <신설>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나. 신용거래정보 ①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②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라. 신용능력정보 1)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 실적,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2)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마. 공공기록정보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바. 가명정보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 링크걸기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1. 이용목적 가. ~라. (현행과 같음)마.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2.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등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명의도용, 보험사기,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라. 신용정보주체의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 실적,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바. 가명정보해당 사항 없음(가명정보 이용시 공시 예정) | 이용목적 추가 신용정보의 종류 명확화 및 구체화신용거래정보 개인/ 기업 동일 항목 통합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판단정보에 포함하여 구체화가명정보 미사용으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1. 제공대상자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정보㈜,SCI평가정보 등), 소액결제업체(다날㈜, KG모빌리언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생략)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다. 금융질서문란정보라. 신용능력정보4. 제휴 업체 등 제3자제공제휴업체 🡪 링크걸기(생략)5. 신용정보처리를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위탁업체 🡪 링크걸기(생략)6.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가명정보 처리 현황 🡪 링크걸기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1. 제공대상가.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나.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정보㈜, SCI평가정보 등)다. 소액결제업체(다날㈜, KG모빌리언스㈜)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현행과 같음)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가. 개인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다. 신용도판단정보라. 신용능력정보마.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4. 제휴 업체 등 제3자제공제휴업체 🡪 링크걸기(현행과 같음)5. 신용정보처리를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위탁업체 🡪 링크걸기(현행과 같음)6.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해당 사항 없음(가명정보 제3자 제공시 공시 예정) | 제공대상 가독성을 위해 분류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추가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미사용으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 |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생략)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생략)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현행과 같음)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현행과 같음) |  |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나.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3년간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3. 연락중지 청구권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소액결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요구할 수 있습니다.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8.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1. 신용정보의 열람 청구권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본인정보 열람 현황 조회하기 🡪 링크 걸기2.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신용정보주체는 최근3년간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이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본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하기 🡪 링크 걸기3. 신용정보의 정정 청구권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 신청을 통해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5. 연락중지 청구권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락중지청구시스템(Do Not Call) 바로가기 🡪 링크 걸기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청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삭제 되기전 개인신용정보의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등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회사∙소액결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9.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0.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1. 권리행사 방법 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 신청서 🡪 링크 걸기나. 전화 접수 : 1599-0722다. 인터넷 접수 : 이메일 보내기 🡪 링크 걸기라. 서면 접수 : 당저축은행 영업점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전면개정신설신설(방법 구체화)  |
|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생략) |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현행과 같음) |  |
|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신용정보관리 보호인(생략)담당자소속 : 준법감시본부성명 : 황동욱 부장/ 한정희 팀장전화 : 031-8015-9225이메일 : dwhwang@pepperbank.kr /paulhan@pepperbank,kr |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신용정보관리 보호인(현행과 같음)신용정보관리 담당자소속 : 준법감시본부성명 : 한정희 리더/ 안지애 과장전화 : 031-8015-9225이메일 : paulhan@pepperbank.kr /jaan@pepperbank,kr | 담당자 변경 |